#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2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임오경·박 정·김홍걸

최혜영 • 유정주 •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· 서영교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·장기 진흥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을 수립·시행하도 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스포츠 분야 전반이 침체됨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이스포츠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9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
	대한 안전・위생・방역 관리
	에 관한 사항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